

음악대학 발전기금관리내규

시행일: 2011.9.26.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경희대학교 음악대학(이하 “음악대학”이라 한다) 발전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금관리·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전기금의 정의)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음악대학 발전을 위하여 기부된 현금, 유가 증권, 부동산 및 기타 재산가치가 있는 물품 등의 기부금품과 적립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종류) 기금은 사용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기금 : 사용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기금
2. 지정기금 :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 기금

제4조(위원회) ① 기금 및 수익금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음악대학에 발전기금관리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은 학장, 각 학과장, 기악주임교수, 음악대학 학생회장, 행정실장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학장이 되며, 위원장은 행정실 직원 중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 제반 실무를 담당하며, 회의록 작성을 담당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관리·운용계획
2. 기금 및 수익금의 사용계획
3. 기금운용을 위한 예산편성 및 결산
4. 기금출연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
5.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6.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회의)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7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이하 “수익금”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외협력처장의 합의를 얻어 사용한다.

- ② 기금 및 수익금은 제1항의 절차를 거쳐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음악대학 교육과정 개발비
 2. 음악대학 교원의 연구비
 3. 음악대학 학생 장학금
 4. 음악대학 대학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의 활성화 등에 필요한 경비
 5. 기타 음악대학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9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희대학교 발전기금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1년 9월 26부터 시행한다.